

# 보도자료

2012. 8. 13.



##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대변인실 ☎ 249-0038 (kyl4328@goe.go.kr)

<자료문의> ☎ 249-0516, 학교혁신과 과장 김기철, 장학관 이중현,  
☎ 249-0072,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장학사 이 성,  
☎ 249-0213, 학교인권지원단 단장 김유성, 장학관 박병영, 장학사 서미향

## 아동청소년인권법(안) 제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진단 및 법 제정 토론회 5장 54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인권 보장 법률의 필요성, 연구팀의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입법방안’ 발제에서,
  - ※ [붙임] 발제문 : 법안 포함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과 아울러 학생 아닌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확장될 필연성을 안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제시했다.

○ 오 교수는 법안 명칭과 관련,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성년’의 관점에서 미성숙 의미의 ‘미성년’을 구체화한 것”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부른다”고 지적하였다.

- 하지만 용어의 일상적인 사용을 감안, “이 법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아동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다만 법안 내용에서는 양자를 달리 쳐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법안 구성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적인 인권 수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영역, ▲아동청소년인권을 구체화하여 목록화한 영역, ▲국가 등에게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여한 영역,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영역,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구제 기관을 정한 영역 등 크게 5가지 부분이며, 부칙을 포함하여 모두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오동석 교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과 더불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도 제시하였다.

□ 이 날 토론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원태 산본고 교사, 박숙경 경희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입법방안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법화 및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아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하고,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인권문서로 공포하였다. 이어서 1990년 9월 29~30일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에는 71개국의 국가 원수를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Child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제이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초 50여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 한국정부는 2008년 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은 협약의 조항에 나타난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 등 8개의 영역(Cluster)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1994년의 제1차 국가보고서는 협약의 이행 정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제1차 보고서는 협약이행 현황의 개선을 위한 명확한 목표의 제시가 부족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사법 및 행정 절차의 보완과 예산편성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1999년의 제2차 국가보고서는 내용면에서 개선된 점이 없지 않지만, 권리협약 이행의 포괄적인 파악과 그 이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민간의 참여와 연계가 미흡하였다.<sup>1)</sup>

1)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28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에 관한 권고를 하였다. 즉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음을 우려하여, ‘모든 아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할 것과 ‘그 기구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이행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정책의 수립단계 또는 보고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하면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동반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좀 더 체계적이며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수립을 포함하여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장래에 국가보고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협약이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이행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보고서 작성에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분리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그리고 ‘상소권보장’ 조항의 유보조항 철회를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아동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으며, 아울러 권리실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한편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아동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운영으로 아동의 접근권 보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여,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체벌에 대한 공공캠페인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지만,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규가 불충분하며 법원이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sup>2)</sup>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아동인권 현실을 반영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하여 국내법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여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승계와 한계 극복

한국에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배경내는 학생인권에 대하여 “10년 넘게 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학생인권은 늘 ‘장외 선수’ 처지였다. 썰렁한 잔칫집 풍경마냥 학생인권은 교육정책은 물론 정책을 풀무질하는 교육 운동에서도 즐겨 찾지 않는 문제였다.”고 슬회한 바 있다.<sup>3)</sup>

그런데 경기도를 필두로 광주시와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한국 사회의 학생인권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지 못한 학생인권 보장을 조례로써나마 일정 부분 달성했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학생인권 논의를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먼저 학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나마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적인 인권 수준에 걸맞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법제와 기구를 수립했어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불가피하게 학생인 아동청소년에 한정되면서 조례의 속성상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선진적인 문제 제기과 실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이는 인권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수용한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국격(國格)’을 한 단

---

2)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2011.10.6. 이에 대한 번역문은 경향신문 2011-11-19 01:57:25; 2011-11-19 01:58:15 수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9015725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90157251&code=940100)>, 검색일: 2011. 11.26.

3)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0784>>, 검색일: 2011.04.09.

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교과부는 교육정책의 혁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대한 위헌적 조치를 일삼아 발전의 계기를 방해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그 인적 범주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정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공간적 효력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과부가 학생인권의 증진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과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학교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생활과정 전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데, 조례의 규범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과 아울러 학생 아닌 아동청소년에까지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확장될 필연성을 안고 있다.

### 3. 국내 아동청소년관련 법제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넘어 ‘미성숙한 미성년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그것의 역사적 소임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체벌, ‘야간자율학습’, 두발, 휴대폰,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생보호자 등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실마리 구실이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관점을 가진 측에서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체벌 등의 전근대적 프레임으로 축소시키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실효성을 왜곡하였다. 학교 폭력의 문제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목표로 하는 인권적 교육생태계의 조성을 통하여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교과부는 대중요법적이면서 반인권적인 정책만 쏟아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높아가는 자살률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한경쟁 교육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제정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문제 제기이다.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아동복

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인권법규범은 아동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국가적 및 사회적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판단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관련 법률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면서 그것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 또한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중심의 인권보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편의주의 관점이 우세하다.

사람들은 법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편으로 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법에 대하여 불신과 거부의 태도를 취하지만, 다른 한편 강력한 법, 제재를 통해 이른바 ‘실효성(實效性)’ 있는 법을 원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도 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처벌 위주의 강력한 법을 원한다.

그러나 인권법은 그 목표는 물론 그 수단 및 과정에서도 인권적이어야 한다. 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의 증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디지만 근본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향한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넘어 아동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제정도 그와 같은 기본정신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II. ‘아동청소년인권법’ 명칭과 모델

흔히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실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성년’의 관점에서 미성숙 의미의 ‘미성년’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성년을 미성숙으로 간주하듯이 아동과 청소년은 다시금 미성숙의 정도를 구별하고, 보호 위주 또는 규제 위주의 이중기준으로 발현된다. 그 구별은 대상개념에 대한 보호 또는 규제 경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요즘 ‘미혼’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듯 ‘성년인’에 대하여 ‘비성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인’이 아니라 ‘성년인’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단지 나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격적 성숙성과 일치하지 않는다.<sup>4)</sup> ‘비성년인’은 ‘성년인’에 의한 호명(呼名)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비성년인’은 익숙한 말이 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아동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다만 법안 내용에서는 양자를 달리 처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구성함에 있어 몇 가지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인권조례의 수직적·수평적 확장으로서 그것의 기본구조인 아동청소년인권 목록 확인(실체법), 인권 보장 절차(절차법), 인권구제기관(조직법) 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의 한계를 가지는 반면에 이것을 전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의미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학생의 학교 안과 밖에서의 인권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보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목록을 구성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인권”이라 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인권목록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인권목록에 예시된 모든 인권을 말한다.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행에 미온적인 것을 반성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인권목록을 재구성해 내고, 일정한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목록의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아동청소년인권의 현실을 극복함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아동청소년인권법전’을 구성하는 것이다. 새로 제정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기본법적 의미를 가지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법률

---

4) 오동석, “학교에서 인권 개선과 생활문화 개선 방안,” 교육평론 통권 제236호, 주간교육신문사, 2012.7., 29 주 30).



을 제정·개정·폐지하여 기본법과 구체화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은 인권뿐만 아니라 법률적 권리까지도 망라하여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에 걸쳐 법제를 재구성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인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목록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확인하고,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등 우선 개정이 필요한 주변 법률 개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후 추가적으로 주변 법률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임으로써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총체적인 단일의 아동청소년권리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비체계적이었던 각종 관련 법률을 종합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부서를 재정비하고, 각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체계화하는 등 근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연구용역으로써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 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기에 적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법률안을 성안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세 번째의 틀을 취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하는 것이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적인 인권 수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아동청소년인권법전의 틀을 갖춘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인권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열어어나가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른바 ‘학생인권법안’, 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꺼번에 개정안을 준비하기에는 버거워서 구체적 법안까지 제안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입법과제가 있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벌 중심으로부터 탈피하는 일이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서 위법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학교 공간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방치되는 과중 학습 부담의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복지 법제의 정비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따라 분산된 아동청소년복지체계를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 보호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의 총체적 환경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함께 노

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편적 복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경제·사회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총체적 보장은 하나의 법률 제정으로 해소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및 제도,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 등이 함께 작동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제정은 아동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후 각 개별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제정과정은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각 부문의 비전과 대안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 III.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의 규범구조

아동청소년인권법의 구조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총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을 구체화하여 목록화한 실체법적 인권헌장이다. 셋째, 국가 등에게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여한 영역이다. 넷째,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 절차를 정한 절차법 영역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 기관을 정한 조직법 영역이다.

#### 1. 기본 원칙

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 10월의 제1차 회기에서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을 채택하면서 4개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즉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그리고 아동 견해의 존중 원칙(제12조) 등이 명시되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은 참여권과 함께 아동 인권 보장의 4개의 주요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sup>5)</sup>

첫째,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이다.

5) 이용교·천정웅·김경준, 청소년 인권과 참여, 양서원, 2009, 158-159.

셋째, 보호받을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넷째,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이다.

## 2. 아동청소년인권현장: 10대 핵심 인권

- (1)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학대 예방
- (2)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4) 자율적·창의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학습할 수 있는 권리
- (5) 인문학·예체능 등 문화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6)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적·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7)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8) 생태 및 평화에 관한 권리
- (9) 사회적 복귀를 위한 총체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10)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3.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한 기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기구로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기구로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sup>6)</sup>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자료를 발간하며,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자료를 생산·보급하며,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국회에 상임위원회의 하나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비롯한 군인의 인권 등의 문제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6) 같은 의견으로 이용교·천정웅·김경준, 청소년 인권과 참여, 양서원, 2009, 173.

#### IV.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방지 및 학생생활 관련 학칙의 제·개정 시 학생총회의 동의
2. 학생회 활동 구체화
  - 1) 선거에 의한 총학생회 구성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구성·운영
  - 2) 임원 구성에서 차별 금지
  - 3) 총학생회 심의·의결 사항: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 4) 총학생회 심의·의결사항의 학교의 장에게 제출
  - 5) 총학생회 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
3. 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사항 예시
  - 1)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을 부과하는 행위
  - 2)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 3)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 4) 학생의 두발, 용모,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5)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 6) 차별행위의 금지.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 7)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 8)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인권교육, 학생인권실태조사, 상담체계 등
5.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V. 아동청소년인권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게 보장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증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포함한다.
4.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존중·보호·실현·증진을 말한다.
5. “국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주체를 말한다.
6. “사업자 등”은 기업이나 각종 단체 등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7. “아동청소년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와 국가 등 및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대중매체”는 시청각에 의한 의사표현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텔레비전·인터넷·라디오·영화·신문·잡지·서적·게임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아동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국적,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 법률에서 예시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이 법률에 예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아동청소년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국가 및 사회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아동청소년이 존엄·자유·평등·연대·복지·평화·생태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격의 조화로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었을 때는 그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는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이 법률에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법률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일반적 책무) ①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이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정책 결정 등 모든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등은 피고용인이 양육하는 아동청소년과 고용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권보장의무자의 활동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 제2장 아동청소년의 인권

제6조(생명에 관한 권리) ①모든 아동청소년은 생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그때부터 성명 및 국적 등을 얻을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성별, 국적,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인권보장의무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국가 등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④어떤 아동청소년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리서는 안 된다.
- ⑤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걸, 착취, 학대, 방임하는 행위를 가해한 자와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⑥국가 등은 폭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사회재통합을 위한 치료와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 ⑦국가 등은 각종 폭력의 가해 아동청소년의 처벌에 있어서 사회적 낙인의 방법을 금지하고,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교육으로 선도해야 한다.
- ⑧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폭력 관련 상담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간접적인 당사자인 경우에도 상담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9조(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과 신체적·심리적·도덕적으로 위해가 되는 고용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국가 등은 모든 형태의 착취, 학대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인해 희생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아동청소년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④국가 등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중독에 빠진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치료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⑤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⑥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②국가 등 또는 보호자는 교육 등의 목적을 이유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②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정하게 아동청소년의 종

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제13조(의사 표현의 권리)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그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사 표현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14조(참여권 및 정치적 활동의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기회에 참여하며 연대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직접 또는 적절한 보호자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③국가 등은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성 표현 및 실현의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말, 글, 예술 또는 아동청소년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인격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인격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사생활, 통신 등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아동청소년은 적절한 먹거리, 의복, 주거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18조(교육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적절한 초등·중등·직업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문화적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나이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따라 문화생활의 권리 및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더불어 오락과 여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적·사회적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가정의 돌봄과 아울러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노동에 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노동과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노동권 침해사례를 신고하거나 노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⑤국가 등은 모든 시민이 아동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⑥사업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는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고려한 노동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22조(생태 및 평화에 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②아동청소년은 평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생태·평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청소년의 가족에 관해 알 권리) ①국가는 가족 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 ②아동청소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에 대한 정보 등과 가족 외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장애아동청소년의 권리) ①장애아동청소년은 모든 활동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장애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치료, 문화, 경제,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국가 등은 장애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반영을 통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복지기관은 장애아동청소년이 차별 받지 않고 최상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교육기관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복지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난민) 국가 등은 난민인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등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청소년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 ①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양육,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이라 한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 아동청소년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권리보호기관과 국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청소년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그 아동청소년은 유엔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장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

제27조(국가 등의 권리 보장 의무) ①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지수 또는 행복지수 등을 개발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③국가 등은 특별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등은 특히 비혼모가 사회적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운동선수가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④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전담하는 병원, 법원, 상담센터 등의 설립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28조(권리에 대한 정보) ①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도록 초등 및 중등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영역의 국제인권적인 원칙과 이 법률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규범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①아동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 또는 국가 등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②범죄의 희생자가 되었거나 증인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개인적으로 획득한 정보와 아동청소년에게 즉시 혹은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아동청소년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원칙을 어긴 당사자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징계의 책임 또는 그 밖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의무) ①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 가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국가 등은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및 편의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안전, 위생분야, 직원 수 등의 기준을 따르고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청소년의 가족과의 분리) ①국가는 적절한 법절차에 따라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분리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아동청소년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③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은 그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1. 부모에 의한 아동청소년 학대·유기 또는 가정환경 때문에 아동청소년·청소년의 생명·건강·발달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
2. 아동청소년이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④아동청소년이 가족과 분리될 경우 그 즉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 전담기관에 의해 가족 외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⑤국가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청소년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3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 ①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발달에 제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②보호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③보호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학대와 체벌·착취 등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④장애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장애아동청소년이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인권 침해 및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 및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제33조(친권의 소멸 및 중단의 절차) ①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은 아동청소년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아동청소년 학대나 비행을 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제1항의 모든 절차에 있어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34조(가족 외 보호의 목적과 원칙) ①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청소년은 국가 등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②가족 외 보호는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겠다고 느끼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복지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가족 외 보호의 유형을 정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가족 외 보호의 책임 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처우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에게 보호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유대감의 재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입양) ①국가 등은 출생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입양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③입양은 아동청소년의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정당하고 적법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국내입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양육,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무) ①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아동청소년의 개성, 재능과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최대한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2. 아동청소년을 교육과정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정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3.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견해나 의견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등을 이해하도록 장려한다.

③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서 차별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④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보호자, 지역사회조직 및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사회적인 위협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국가 등은 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의 의무를 가진다.

⑨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동착취 등과 관련한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및 상담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⑩국가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전 아동청소년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상을 재고하고, 강제 아동청소년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37조(아동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의 법적 책임) ①아동청소년보호기관의 관리자 및 직원은 아동청소년

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관계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징계의 책임 또는 그 밖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제1항의 관계자를 고용할 때는 그들의 과거 활동에 관한 정보, 능력,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8조(교육기관의 책무) ①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인 아동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점수로 인한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9조(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은 아동청소년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 법원 또는 그 밖의 아동청소년인권보호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40조(아동청소년과 대중매체)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및 균형 있는 사회적 관점을 위하여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41조(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①기업은 아동청소년을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기업은 정해진 아동청소년권리지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4장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절차

제42조(법 위반 아동청소년) ①만 14세 이상의 법 위반 아동청소년은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아동청소년은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보호자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아동청소년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료의 통역 지원을 받는다.

제43조(아동청소년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①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위법행위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및 자원의 조사
2. 위법행위 방지 활동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 기관, 시설 및 직원 책무의 명기
3. 위법행위 방지 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4. 예측 연구에 기초한 정책, 프로그램, 구체적인 방침의 시행 및 그 실시 과정의 지속적인 감독과 평가
5. 위법행위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
6. 광범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여
7. 각종 관여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방안
8.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자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법행위 방지 정책 및 그 절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방안
9. 모든 차원에서 전문가의 배치

제44조(비사법적 제재) ①범죄가 중대하지 않거나 가정과 학교 기타 비공식적인 기관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미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하려는 사건 등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비사법적 절차가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②지역사회 기타 적절한 기관에의 위탁을 포함한 비사법적 제재는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비사법적 제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시적인 감독·지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제45조(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처우) ①적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처우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당해 처분은 항상 아동청소년의 상황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범죄 상황과 중대성 및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은 아동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기타 중대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다고 인정된 경우에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4.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모든 아동청소년은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5.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모든 아동청소년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6조(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비밀 보호) ①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②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범죄자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③아동청소년범죄자의 기록은 비밀이 엄중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④아동청소년범죄자의 기록은 성인이 된 후의 사건의 절차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⑤아동청소년에 불리한 모든 기록은 해당 조치 종료된 후에는 밀봉되고 적당한 시기에 말소되어야 한다.

제47조(시설수용 아동청소년) ①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성인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는 구획을 달리 하는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한 특별 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는 신중하게 선별된 성인에 한하여 아동청소년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인 아동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요한다.

②시설수용 아동청소년은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③시설수용아동청소년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회적·교육적·직업적·심리학·의학·의학적 및 신체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시설수용아동청소년은 수용시설에서 행해지는 종교 집회 또는 의식에 참석하거나 종교 의식 또는 교리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⑤시설수용아동청소년은 충분한 교과 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⑥시설수용아동청소년 중 의무교육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지역사회 학교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교사에 의해 정규 교육제도에 편입된 프로그램으로 행해져야 한다.

⑦아동청소년수용시설의 관리자는 외국인 또는 특수한 문화적·민족적 수요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⑧의무교육 취학연령을 초과한 시설수용아동청소년은 자신이 계속해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등은 해당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⑨시설수용아동청소년에게 수여되는 증서나 교육증명서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시설수용 사실이 적시되어서는 안 된다.

⑩모든 아동청소년수용시설은 교육 및 도서와 아동청소년용 정기간행물을 충분히 갖춘 도서실을 제공하여야 하고, 시설수용아동청소년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⑪시설수용아동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에 종사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그 경우 아동청소년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8조(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①아동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의 법적 책임은, 어떤 경우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다.

②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이 이러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5장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 보장제도

제49조(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과정을 감독하고 분석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의 협조로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연간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③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5년마다 유엔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지위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실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⑤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기타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한다.

제50조(아동청소년권리보호위원회) ①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권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청소년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의 기본방향 및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 사항
4. 아동청소년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청소년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3.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추진목표
  4.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등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 VI.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학칙의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5(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을 부과하는 행위
2.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3.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4. 학생의 두발, 용모,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5.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6.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병력, 사상·신념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7.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

는 행위

제18조의6(인권교육 등)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하게 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